

제 592 호

1977. 2. 22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자준

편집 : 문화공보관 조용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5444

시 보

차례

◎ 조례

- 제 1144 호 서울특별시 하천침용로 등 정수조례증
개정조례 3
- 제 1145 호 서울특별시 압축가스용기검사수수료 정수조례
폐지조례 4
- 제 1146 호 서울특별시 가내공업센타조례 폐지조례 4
- 제 1147 호 서울특별시 시범농촌개발조성사업기금설치
조례폐지조례 4

◎ 규칙

- 제 1675 호 서울특별시 압축가스용기검사수수료정수조례시행
규칙폐지규칙 5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보도제작	공보제작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공보관	월	공
	88	88	X	88	14	람

1406

◎ 고 시

제 39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5

제 40 호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및 지적승인 6

제 41 호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지적승인 7

제 42 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적승인 7

◎ 공 고

제 34 호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공람 공고 8

제 35 호 환지계획 일부변경 공람 공고 9

제 8 호 (도봉구공고) 공인개각공고 10

◎ 예 규

제 341 호 경찰경비부서 인사관리규정 총 개정 11

제 342 호 경찰국 정보과 기록실운영요강 폐지 11

◎ 정 정 (규칙 제 1670 호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총 개정규칙) 12

조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로등 징수조례증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년 2월 22일

⑤ 서울특별시조례제 1144호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로등
징수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로등 징수조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중 "하천법 제 33 조 제 1 항" 다음에 "및 동법시행규칙 제 26 조의 2"를 삽입한다.

별표중 제 8 호의 토석, 사적의 채취 산정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1977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까지의 토석 및 사적의 채취 수수료 산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요금 산정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8. 토석, 사적의 채취	<p>1. 서울특별시의 전년도 10월 말 현재의 토석, 사적 도매물가의 100분의 15, 다만 도매물가(가공재품 제외)는 공실력이 있는 조사기관의 조사에 의하고, 매년초에 당해년도에 적용할 사용료를 고시하여야 한다.</p> <p>2.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5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각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15-4 제 592 호

시

1977.2.22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압축가스용기 검사수수료 정수조례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년 2월 22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1145 호

서울특별시 압축가스용기검사 수수료정수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압축가스용기 검사수수료 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가내공업센타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년 2월 22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1146 호

서울특별시 가내공업센타 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 가내공업센타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범농촌 개발조성사업 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년 2월 22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1147 호

서울특별시 시범농촌개발조성사업 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시범농촌 개발조성사업 기금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 칙

서울특별시 압축가스용기검사수수료 정수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년 2월 22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675 호

서울특별시 암축가스용기 검사수수로
정수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 암축가스용기 검사수수로
정수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9 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1. 당시 평내 불합리한 도시계획선
재정비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도
시계획시설(도로)을 변경하고 지
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행정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제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와 광활구청 시민봉사실에 미치하여
도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
고 있다.

1977. 2. 21

서울특별시장

①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및 지적승인 조서

재적번호	구분	동급	류별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성북5	기점	소로	3	6	30	성북동 2-45	성북동 145-67	
"	변경	"	"	"	"	"	"	위치변경
도봉1	기점	"	"	"	"	미아동 480-5	미아동 480-29	
"	변경	"	"	"	"	"	"	폐지
도봉2	기점	"	1	10	120	월계동 68-76	월계동 62-3답	
"	변경	"	"	"	"	"	"	위치변경
도봉9	기점	"	3	6	85	미아동 653-129	미아동 852-288	
"	변경	"	"	"	"	"	"	폐지

15-6 제 592 호

시

보

1977.2.22

재정비 번호	부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고
도봉14	기정	소로	2	8	20	상계동 156-118	상계동 156-13	
"	변경	"	"	"	30	상계동 156-13	" 156-7	위치변경
도봉15	기정	"		4	45	수유동 269-59	수유동 270-190	
"	변경	"	"	"	"	"	"	"
도봉17	기정	"	3	6	110	미아동 773-16	미아동 779-1	
"	변경	"	"	"	"	" 300-54	" 300-31	"
도봉21	기정	"	1	10	50	수유동 273-55	수유동 273-55	
"	변경	"	"	"	"	" 앞	" 앞	"
도봉27	기정	"	3	6	70	수유동 443-2	수유동 445-37	
"	변경	"	"	"	"	"	"	"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40 호

도시 계획시설(시장)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
여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
조 규정과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인다.

1977.2.21

서울특별시장

가. 시장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번동시장	도봉구 번동 54	1,938.8 평	
	장안시장	동대문구 장안동 217-2	1,403 평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41 호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지적승인 1. 건설부 고시 제 139 호 (76.8.26) 및 건설부 고시 제 37 호 (76.3.27) 로 일부변경 고시된 용도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 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①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 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에 각각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7. 2. 21 서울특별시장
--	--	--

가.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지적승인 소서

변경구분	위치	면적 (ha)	비고
주거 - 준주거	용산구 한남동	37.500	
주거 - 주거전용	종로구 평창, 구기동.	1.160.000	
	용산구 이태원동	408.700	
주거 - 자연녹지	용산구 용산동	3.593.850	미 8호주거
상업 - 자연녹지		73.750	

(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42 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 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 규정과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 2. 21 서울특별시장
--	---

가. 주차장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성동구 중곡동 40-1, 2 호	1,204 ㎡ (398 평)	원효여객
	성북구 정릉동 820-18, 19, 36 호	1,679 ㎡ (509 평)	삼선버스

별첨 : 도면표사와·갈음(도면생략)

고 고

⑥ 서울특별시 공고제 34호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공람공고

1. 전고시 294호(75.8.30) 및 18호
(75.2.8)로 주택개량을 위한 재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된 욕인구역 등
10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과
변경코자 동법제34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한다.

2. 관계도서는 관할구청(주택과 또는
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재개발
사업 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고
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7.2.22

서울특별시장

가. 공 람 내 용

사업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욕인구역	종로·욕인동 산3번지 일대	48,899	사업기간연기
상도제5구역	관악·상도동 123	79,917	"
봉천제1	관악·봉천1동 일대	172,073	"
봉천제2	관악·봉천동 산94	94,380	"
봉천제3	" " 101	180,255	"
봉천제4	" "	335,205	"
봉천제7	" "	176,926	"
사당제1	관악·사당동 산11번지 일대	45,061	"
사당제4	" 산12	195,231	"
명륜구역	종로·명륜동 3가 산3-15	98,010	"
계	10개구역	1,425,957	

나.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다. 사업의 차수 및 준공 예정일

당초 : 인가일로부터 2개년

변경 : 인가일로부터 81.12.30까지

라. 설계도서 및 재원조서 :

생략(별첨)

마. 수용 또는 사용할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 생략(별첨)

바. 관계인의 주소, 성명 : 생략(별첨)

◎ 서울특별시 공고제 35 호

환경계획 일부변경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역촌추가, 시흥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일부 토지에 대한
환경계획을 일부변경코자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5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부터 14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공람 공고한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서류 송달은 벌도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보할 것이다.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은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7. 2. 22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명 : 역촌추가와 시흥토지
구획정리 사업

나. 변경내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일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산동
일부

다. 월 지 수 : 5 월 지

라. 변경조서 및 도면 : 생략(서울
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
비치)

15-10 채 592 호

시 보

1977.2.22

◎도봉구공고제8호

공인개작공고

다음과 같이 당구 산하 상계제2동장의 공인을 폐기하고 개작 사용
도록 하였기 이를 공고함.

1977. 2.

도 봉 구 청 장

1. 공인명 : 상계제2동장인 및 계인

2. 사용개시일자 : 1977. 2. 21 09:30

3. 공인의 인영 : 다음과

동명	상계제2동장	계인
폐 기 인 영		
신 조 인 영		

예 규

경찰경비부서 인사관리 규정중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7.2.24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 서울특별시 예규 제 341 호

경찰경비부서인사관리규정중개정
경찰경비부서 인사관리 규정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중 제 1. 3. 4 항을 다음과 같
이 한다.

① 순위자 명부는 매년 2월 1일
현재로 1회 작성한다.

③ 순위자 명부의 등재순위는 개인의
승진에 관계없이 최종 경비부서
복무를 위한 년월일 순으로 하되
같은 때에는 년장자를 우선 순으로
한다.

④ 서울시로 전입하여 일반부서에
배치된 자(이하 타시도전입자라 한다)
는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전투경찰대, 기동대, 치안본부 상황
실 및 경찰대학에서 복무기간을 필자는
서울시 경비부서 복무필자로 본다.

2. 전 1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는
미필자로서 명부작성일 기준 등장
순으로 등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7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찰국 정보과 기록실 운영요강 폐지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7.2.24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 서울특별시 예규 제 342 호

경찰국정보과기록실운영요강 폐지
경찰국 정보과 기록실 운영 요강
(예규 제 192 호 1969.4.4) 을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요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15-12 제 592 호

시

보

1977.2.22

정 정

시보 제 588 호 (77.2.7) 규칙
 제 1670 호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중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정
 한다.

1977.2.22

서울특별시장

⑤ 서울특별시 규칙 제 1670 호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조 (정의) 이 규칙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어의 정의는
 당해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국: 시장 직속의 관과 시의 국
 을 말한다.
2. 국장: 시장 직속의 관과 시의
 국장을 말한다.

3. 과: 시의 과와 담당분을 말한다.
 - 4.과장: 시의 과장과 담당분을
 말한다.
 5. 본청: 시청을 말한다.
 6. 청, 소: 본청 이외의 구, 출장소,
 동, 공무원교육원, 산업대학, 종합운동
 장전설본부, 주택건설사업소, 병원,
 보건연구소, 지하철본부, 소방본부,
 시민회관, 농촌지도소, 경찰서, 소방서
 기타 시의 사업소를 말한다.
 7. 청, 소의장: 천호에 규정하는
 청, 소의장을 말한다.
 - 제 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 3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 (1)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
 다) 제 6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
 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분임자를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1. 본 청

정 수 관	재 무 국 장
일반회계부임정수관	세 정 과 장
자특별회계부임정수관	자특별회계주관국장
경리관	재 무 국 장
분임경리관	회 계 과 장
물품관리관	회 계 과 장
분임물품관리관	자과장 및 담당관
지출원	회계과 지출계장
일반회계수입금출납원	세정과 과장 1.계장
자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자특별회계세입사무담당계장
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	회계과 지출계장
물품출납원	회계과 서무계장
분임물품출납원	각과와 담당과의 주무책장
임시전도자금출납원	시장이 필요에 따라 지정

2. 청 · 소

가. 구 · 출장소 · 등

정 수 관	청·소의장 (단. 시세는 구청장,) 출장소장에 한한다.
분임경리관	청·소의장
물품관리관	청·소의장
일반회계수입금출납원	세무계 1, 2과장, 출장소는 세무과장

15-14 제592호 시

보

1977.2.22

각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각 특별회계 주관과장
분 임 지 출 원	재무과장, 출장소는 총무과장
일반회계분임수입금출납원	세무제1과 세무제1계장과 세무제2과 정리계장
	출장소는 세무과 수납계장과 정리계장
	동사무장
각 특별회계분임수입금출납원	각 특별회계 세입사무 담당계장
전 도 자 금 출 납 원	동사무장
세 입 세 출의 현금출납원	경리계장, 출장소는 총무계장
물 품 출 납 원	재무과장, 출장소는 총무과장
분 임 물 품 출 납 원	각 실과장
임시전도자금출납원	청·소의장이 필요에 따라 지정
도 급 경 비 출 납 원	동사무장
 나. 기타 사업소	
정 수 관	청·소의장
분 임 경 리 관	청·소의장
물 품 관 리 관	청·소의장
수 입 금 출 납 원	수납담당 3급 윤류과·제장 (과제가 없는 사업소는 수납담당제장)
분 임 지 출 원	경리담당 3급 윤류과·제장 (과제가 없는 사업소는 경리담당제장)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	경리 담당 3급율류 과·과장 (과제가 없는 사업소는 경리 담당과장)
물 품 출 납 원	경리과장 또는 주무과장 (과제가 없는 사업소는 경리제장 또는 주무제장)
분임 물품출납원	3급율류인 각과장 또는 주무제장 (과제가 없는 사업소는 주무제장) 병원에 있어서는 약품에 한하여 약제과장
임시전 도자금출납원	청소의 장이 필요에 따라 지정

②직제의 변경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지출원과 현금출납원의 직무가 경 하게 되는 경우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 청·소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 이 이를 분리지정하거나 따로 임명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전에 행정기구(대통령령 제8238 : 76. 12.30)의 개편에 따라 변경된 기관 청호 및 지정된 관직은 이 규칙에 의하여 변경 및 지정 된 것으로 본다.